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이란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이란으로,
“종합계획으로”를 “종합계획으로서 토지이용,”으로,
“환경 등 분야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”을 “환경, 공원, 녹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2장의 제목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본방향으로 한다.

제2장 도시계획위원회

<신 설>

<신 설>

제2장 강서구도시기본계획

제4조(기본방향) ① 강서구도시기본
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
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
한다.

②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
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
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
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본계획 내용
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
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
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
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
축해야 한다.

⑤ 기본계획은 구청장 임기와 연동
하여 4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
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내용) 기본계획에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
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
표에 관한 사항
2.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공원·
녹지·경관 등에 관한 사항
3. 도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
사항
4. 도시·구계획시설 배치에 관한
사항
5.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
사항
6. 그 밖에 강서구 발전에 필요한

제2장
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

제4조(기본방향) ① 강서구
도시발전기본계획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

운영 등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 1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(생략)
2.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
3. (생략)
4.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
5. 6. (생략)

사항

제6조(타계획과의 관계)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,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등 그 밖의 도시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3장 도시계획위원회

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

등

제7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 강서구에 -----

-----.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- 구청장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--- 도시계획 관련 ---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그 위원의 수를 30명까지로 할 수 있다.

② ~ ⑪ (생략)

제5조 ~ 제7조 (생략)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9조 · 제10조 (생략)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 · 제13조 (생략)

제8조(구성) ① -----

----- 있으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· 제14조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

제15조(간사 및 서기) ① -----

----- 두고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12조 및

제14조(회의결과의 관리) ①
·②(생략)

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
으로 한다. 다만, 국회·시의
회·구의회·감사원·법원
·검찰·경찰 등의 기관장
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
정되는 경우 실명을 표기하
지 않은 회의록을 작성하여
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법 제113조2 및
영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
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
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
일(단, 심사 보류된 안건의
경우 6개월)이 경과한 날부
터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
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
다.

⑥(생략)

제15조(수당 등) 구청장은
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
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
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
다.

제16조(준용) ① 이 조례에 규
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
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
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
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
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

제13조와 같음)

제18조(회의결과의 관리) ①·②(현
행과 같음)

③ 회의록 관련 사항은 시 조례 제
61조를 따른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④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19조(수당 등) ----- 강서
구 공무원 및 구의원-----

-----.

제2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
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
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
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이를 준용한다.

제17조 (생 략)

제2절
도시계획상임기획단

<신 설>

제18조 (생 략)

제19조(기획단의 구성) ① (생 략)

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,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소속 일반 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20조 ~ 제22조 (생 략)

제3장 보 칙

<신 설>

제23조 (생 략)

제21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<삭 제>

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제22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

제23조(기획단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강서구 소속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 ~ 제26조 (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)

<삭 제>

제4장 보 칙

제27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